

# 『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### 2. 제안이유

- 「건설기술관리법」의 전부개정 및 「구미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」의 폐지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제명 및 조문을 수정하여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인 「건설기술관리법」의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별지 서식 변경(안 제2조, 제5조, 제7조, 안 별지 제2호서식)
  - (현행) : 「건설기술관리법」 → (개정) : 「건설기술 진흥법」
- 자치법규인 「구미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」 폐지에 따라 인용된 법령명칭 수정(안 제12조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#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건설기술 진흥법」, 「지방공무원 징계규칙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법인 「건설기술관리법」이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으로 전부개정되고 「구미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」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관계법령을 수정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### ○ 검토 결과

-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관계법령을 현행화하고 시민들의 자치법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